

부정비리 불공정거래 방지 가이드

-인사팀-

CAMMSYS

www.cammsys.net

Contents

Chapter1. 부정비리, 불공정거래 방지 가이드 (목적, 항목, 판단기준)	03
Chapter2. 관련 법규	04
Chapter3. 관련 사례	06
Chapter4. 고충처리 및 제보자 보호	07

01 부정비리, 불공정거래 방지 가이드

부정비리, 불공정거래 방지 가이드의 목적

- 부당한 거래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구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올바른 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고충처리 항목

부정비리, 불공정 거래 방지

- 부정 청탁, 금품 등 수수행위, 직원 부패 및 비위 행위, 자재납품 관련 비리, 갑질, 차별 및 기타 예산낭비 및 품위 손상 등의 부정비리 관련 사례와 비윤리적 행위 금지.

각 항목별 판단기준

공정거래 준수

- 불공정거래행위란 협력업체 거래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혜/불이익을 주거나, 법을 위반하는 행위, 협력업체 또는 경쟁업체와 거래가격을 담합하는 불법 행위로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제40조, 제45조, 제46조의 행위를 말함.
- 부정비리: 부정비리 행위란 다음의 행위를 말함.
(금품/향응수수, 부당한 업무처리, 자산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 문서/계수 조작 등)

▪ 각 항목별 관련 법규

▪ 공정거래법 i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②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2. 연구·기술개발
 3. 거래조건의 합리화
 4.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방법·절차 및 인가사항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해당 거래분야,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2. 제1항 각 호의 행위(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 ⑥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02 부정비리, 불공정거래 방지 가이드 – 관련 법규

▪ 각 항목별 관련 법규

▪ 공정거래법 ii

▪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9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 고시할 수 있다.
-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 ⑥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4호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피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인 경우

▪ 공정거래 미준수로 볼 수 있는 사례

▪ 사례.1

- 거래처에 대해 자기와의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등

1. 거래처에 대해 자기와의 거래를 강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거래처의 자유롭고도 자주적인 판단에 의한 거래가 저해되어, 경쟁자가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됨.
2. 거래처에 대해 자기와의 거래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취급을 한다는 취지를 시사하여 자기와의 거래를 요청 또는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행위라고 할 수 있음.

▪ 사례.2

- 거래조건의 차별취급 행위 등

1. 부당하게 어떤 사업자에 대해 거래조건 또는 실사에 대해서 유리 또는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거래조건의 차별적 취급으로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됨.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행위는 거래조건 등의 차별적 취급 행위로 판단.
2.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수료를 지불케 하는 것

▪ 사례.3

- 부당한 거래거절 등

1. 부당하게 어떤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에 관련한 상품, 서비스의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거나 혹은 사업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키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됨.

▪ 사례.4

- 경쟁자에 대한 거래 방해

1. 자기 또는 자기 주주 혹은 임원인 회사와 국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그의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에 대해서 계약 성립의 저지, 계약의 불이행의 유인, 그 밖에 방법을 불문하고 그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됨.

▪ 사례.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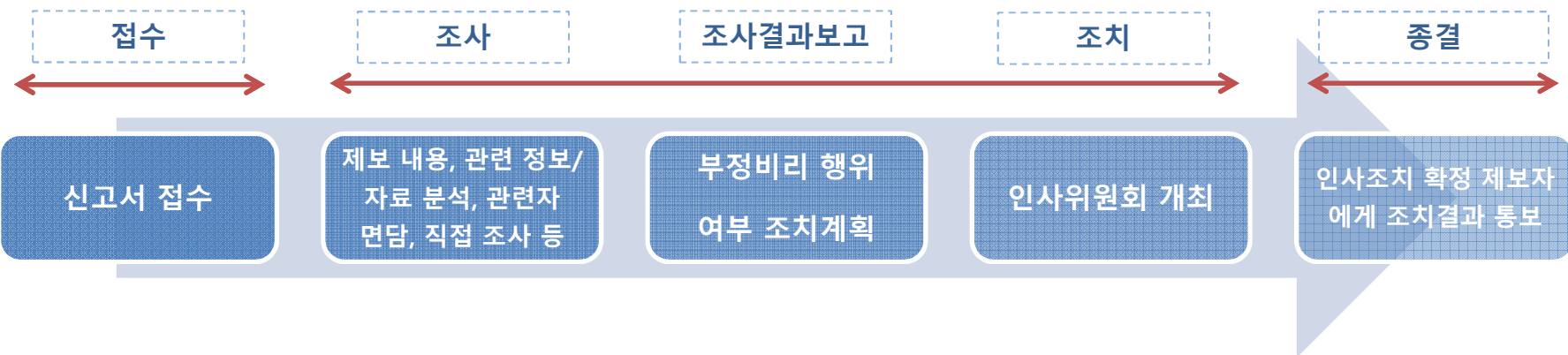
- 부당염가판매

1.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그 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현저하게 밑도는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그 외 부당하게 상품 또는 역무를 낮은 대가로 공급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됨.

04 부정비리, 불공정거래 방지 가이드

▪ 제보 및 제보자 보호(공정거래 미준수, 부정 비리 등)

- 부정 청탁, 금품 등 수수행위, 직원 부패 및 비위 행위, 자재납품 관련 비리, 갑질, 차별 및 기타 예산낭비 및 품위손상 등의 부정비리관련 사례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회사 홈페이지 불공정거래, 부정비리 제보란을 통해 접수 받고 있습니다.



▪ 제보방법

- ⇒ 불공정거래 제보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첨부된 양식을 작성 후 각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면담을 통해 제보한다.
 - 불공정거래행위(법무팀): sroh@cammsys.net
 - 부정비리, 윤리상담(인사팀): kangil83.lee@cammsys.net

▪ 제보자 보호기준

- ⇒ 정당한 제보를 한 제보자는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는다.
-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 된다.
- ⇒ 제보에 대한 사실확인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대상에 대하여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된다.